

인공지능의 법인격과 사법상의 책임

노영숙* · 황태오** · 박환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기술의 상용화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는 첫째, 인공지능에 대한 관점은 인간주의적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특정 분야에서 인간과 동일한 행동을 하면 강한 인공지능으로 분류하는 인간주의적 관점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둘째, 인공지능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창작, 의료,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용화되고 있고, 특히 창작, 의료 등에서는 각각 저작권, 업무상 과실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데, 인공지능의 문제에 대한 책임 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는 법인과 동일선상에 있고, 특정 경우 자연인에 준한다. 이는 권리주체이면서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권리가 부여된 법인과 같이 자연인에 의제하여 인공지능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인공지능이 특정 분야에서 개입 정도가 심하다면 자연인의 행위와 동일한 수준에서 판단함이 합당하다.

주제어 :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법적문제, 권리의 주체, 법적지위

* 공동저자,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겸임교수(summer3386119@hanmail.net)
** 공동저자,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법학전공 학생
*** 교신저자,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부교수

I. 서론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 지능(AI시스템), 사물 인터넷(IoT), 빅데이터(BigData), 스마트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 변화가 나타나는 산업혁명사회를 의미한다. 개념적인 측면 외에도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2014년 영국 레딩대학교 연구진이 만든 인공지능인 ‘유진 구스트만(Eugene Goostman)’이 인공지능의 지능을 판별하는 튜링테스트를 통과하였고, 세계최초로 시민권을 부여받은 인공지능 ‘Sophia’, 2016년에는 딥 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도입한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가 최초로 인간과의 대국에서 승리하면서 기술의 발전 역시 인공지능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는 이미 상용화된 IBM사의 인공지능 의사 ‘왓슨’, 테슬라사(Tesla, Inc)와 우버(Uber)사의 ‘자율주행자동차’ 등을 보며 과학발전의 과실을 기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긍정적인 방향으로서의 단상일 뿐이다. 일반인들의 생각보다 과학은 매우 빠르게 진보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수준이 점점 프로그래밍의 영역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화하고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이 탑재됨에 따라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움직이는 인공지능의 등장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로봇의 행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프로그래밍한 프로그래머의 의지도 아니고, 그 로봇을 다루는 파일럿의 의지도 아닌 자신의 사고로서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는 법학적인 측면과 실용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매우 중요한 것이다. 2015년 7월 1일 독일의 중부도시 카셀에 소재한 폭스바겐(Volkswagen)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한 엔지니어가 공장의 로봇에 의해 최초로 살해당하는 사건¹⁾이 일어남으로써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1) 폭스바겐 외주업체의 엔지니어가 로봇근처에서 일하다가 로봇으로부터 가슴을 맞고 금속판에 떠밀려 압사한 사건으로 최초의 로봇 살인사건으로 일컬음.

이와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 데, 인공지능이 범죄를 일으킨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에 대해 큰 문제점을 제시해주며 기존의 생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가 무엇인지, 또 사법상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행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다. 근대법학이 처음 등장하였을 때에는 사법상의 책임주체는 자연인이었다. 그러나 사회와 과학의 발전에 따라 단순한 조직체에 불과했던 법인에게 법적지위와 책임을 부여하게 되었고, 윤리의 발전에 맞춰 동물에게도 법적지위가 부여되었다(윤철홍, 2018). 본래 없던 법인격을 부여하게 된 이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인공지능에게도 법인격을 부여하고 사법상의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다면 그 범위는 단순한 알고리즘 기계인 약한 인공지능과 딥러닝 기술을 탑재하고 인간과 같은 사고를 할 가능성이 있는 강한 인공지능 모두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 강한 인공지능에만 부여할 수 있는지 인공지능과 인격권의 개념과 발전의 이론적 근거와 인공지능 관련 선행연구를 통한 연구방향을 정할 것이다²⁾. 또한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파악·분석하고자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하여 인공지능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II. 인공지능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인공지능의 의의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 인간의 능력에 준하거나 뛰어넘는 고도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인공적 지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 또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컴퓨터

2) 본 논문에서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사비니, 칸트의 인격론에 의하면 법인 역시 인격이 없는 존재임에도 인격이 부여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였음.

공학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스스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능형 로봇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1조제2항』에서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다.“인공지능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여 연산문제의 해결, 짧은 이야기의 이해, 새로운 개념의 학습, 병의 진단, 유추에 의한 추론 등을 포함하는 모든 유형의 인지적 활동이 인공지능분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인공지능은 일반적으로 지각, 기억, 탐색과정, 언어, 문제해결, 예술적인 업무수행과 로봇공학과 관련된 다양한 학제적 연구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시각, 촉각, 미각, 청각, 후각 등의 능력을 활용하여 지식을 얻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을 인공지능 또한 같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³⁾이며 이것은 인공지능의 연구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정신적 모델을 실제로 구현하려는 데서 출발했기 때문이다(손영화, 2016: 4).

2. 인공지능의 구분

인공지능을 구분할 때 흔히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분류하는 방법은 인공지능과 인간을 구분하는 데에서도 사용된다(John Searle, 1980). 약한 인공지능이란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재되는 프로그램과 같이 일부 지능적인 행동을 보이는 인공적 지능을 말하는 것이다. 즉 인공지능연구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단지 인간의 지능에 근접한 지적 특성을 나타낼 뿐이며 인간의 지능을 연구하는 유용한 도구로서 가치가 있다. 반면 강한 인공지능연구에서의 컴퓨터 프로그램은 단순한 도구로 여겨지지 않으며 약한 인공지능과 달리 실제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인간과 인공지능을 구분하는 데에는 세 가지 유형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보공개청구(2018.10.29)하여 확보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시각 지능분야에서는 이미 인간의 인식률을 추월하였고, 언어·청각 지능은 인간 수준에 근접하여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는데, 첫째는 인간의 창의적인 마음과 인공지능을 구분하는 이론이며, 둘째는 인간의 포괄적인 능력을 강한 지능의 기준으로 삼는 관점이며, 셋째는 인간보다 우월한 종을 강한 인공지능의 기준과 목표로 삼는 관점이다. 이러한 인간과 인공지능을 구분하는 기준은 인공지능을 구분하는 기준과도 겹치거나 수렴되는 지점이기도 하며, 대표적인 방식이 인공지능의 ‘강함’과 ‘약함’의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은 관점에 따라 형이상학적 관점, 인간주의적 관점, 초지능주의적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형이상학적 관점은 인간의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강한 인공지능이라는 기준이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인간의 고유성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점이며, 마음에 고유한 본질을 설정하면서 기계는 인간과 동일한 지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이론은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의 발전과 진보를 거둬들이는 데 따라 무력화되거나 추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물론 인공지능의 발전에도 기계가 인간처럼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는지에 대한 철학적 문제부터 법인격 인정 여부에 이르기까지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인간주의적 관점은 형이상학적 관점과 달리 마음의 고유한 본질을 강조하지는 않아도 인공지능의 작동방식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진보 앞에서 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이다(김진석, 2017). 특정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인간과 비슷하거나 보다 우월한 능력을 발휘한다면 인공지능이 정말 인간의 마음과 동일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동일한 본질을 갖는지에 대한 논의를 떠나 다른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인간다운 모습과 감성을 가지지 않는 약한 인공지능 또한 특정 분야에서 인간 못지않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강한 인공지능으로 보아 법적지위를 부여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셋째, 초지능주의적 관점은 모든 영역에서 인간 이상의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며 인간보다 우월한 능력을 가질 것이라는 관점이다. 초지능주의는 기계는 지식을 쉽게 습득하고 공유하며 최고의 기술과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수준의 인공지능이 탄생한다면 언젠가 인간의 지능을 초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내재적인 고유성을 가지느냐는 중요하지 않으며, 기술과 기능적인 차원에서 인간보다 우월하다면 “강력한 인공지능”으로 본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인공지능은 불안정하고 인간의 도구나 보조수단에 머물러 있지만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장지현, 2017). 이미 특정분야에서는 인간 고유의 본질을 지니지 않았더라도 인간의 능력에 준하는 인공지능들의 상용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미 상용화 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사례들에서 사고나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활동 분야에 따라 향후 법률로 다르게 정의하여야 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간 고유 지능의 모든 국면을 포괄하거나 초월하는 강한 인공지능(strong AI)의 구현은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면서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도 도달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고인석, 2012: 7). 따라서 인공지능의 발전과 진보 앞에서 오늘날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인간의 고유한 본질을 강조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인간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출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Ⅲ. 인격권과 인공지능의 법적지위

1. 인격권의 개념과 형성

인격권은 그 의미가 포괄적이지만 일반적으로 “생명권⁴⁾, 신체권, 건강권, 자유권”인 신체적 권리와 “초상권, 사생활권(프라이버시권)”인 정신적 권리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두 가지의 권리를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다.

4) 인공지능의 생명권에 대해 EU결의안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해치려고 하는 경우 킬 스위치(Kill Switch)를 설치하고 작동하였다. 이는 인간의 사형과 같다고 판단한 것이고,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것은 인공지능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시기에 대해서는 법인이 등기를 통해 그 시기를 판단하듯, 인공지능도 전자인격의 등기를 통해 시기를 판단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헌법 제10조 전단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인격권과 같은 것으로 포괄적인 권리라는 것이 국내의 주류의견이다. 따라서 우리 사법상에서 인격권의 보호범익은 인격성이다. 이는 다른 존재들과 다르게 인간만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성적인 존재이며 독립하여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형성하고 완성하는 존재라는 것이다(송지원, 2017: 21). 다만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격권은 일반조항이라고 불리기에 미흡한 면이 많다. 우리나라는 개별적 인격권으로서 초상권, 사생활권 등의 조항을 만들어 보호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각국이 인격권을 더욱 널리 인정하고자 입법 추진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비해 미흡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은 1954년 민법 제823조제1항의 ‘기타의 권리(sonstiges Recht)’에 일반적 인격권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으로써 인격권에 대한 일반조항을 만들었다(최연재, 2000: 16). 스위스는 민법 제28조에서 인격적 관계에 대한 위법한 침해의 금지를 규정하면서 가장 포괄적으로 인격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2016년에 유럽연합의회에서 전자인간이라는 새로운 법인격을 인공지능에 부여하자는 의견이 유럽에서 처음 나왔다는 것과 관련 없지 않다.⁵⁾

따라서 인격권에 대한 일반조항을 통해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에 새로운 인격권을 부여함에 있어 큰 장애요소라고 할 수 있다. 현대에 와서는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주장하고 이를 보호받을 권리로서 당연히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인격권이 처음부터 인정받던 권리는 아니었다. 현재의 의미로서의 인격권은 독일에서 처음 형성된 것으로 보는데, 19세기 독일 민법의 입법자들은 인격권을 독자적 권리로 긍정하지 않았다. 인격권이 사법적 권리로 인정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였다(양천수, 2011: 7).

19세기의 인격권은 인격성이 과연 법적 권리인 것인지를 논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계몽주의의 사상적 논의를 거쳐 근대사법

5) 2016년에 처음 발의된 안건은 2017년 유럽의회 의결안을 통과하며 법제화 되었음.

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사비니(Savigny Friedrich Karl von)는 권리란 “법 질서로부터 개인이 부여받은 법적인 힘”을 의미하며, 그 권리주체는 Person 이라고 하였다. 결국 권리능력 및 권리주체는 법인격성과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봉림, 2008: 72). 비록 사비니는 인격성을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이미 주어진 생명·신체·자유 등은 지극히 당연히 영위하는 것일 뿐 법적권리라고 하지는 않았으나, 법질서로부터 개인이 부여받은 법적인 힘이라는 개념은 이후에도 소수파를 통해 꾸준히 이어지다 20세기 독일의 법학자인 기르케(Gierke)⁶⁾가 권리능력을 ‘인격’으로 규정하며 모든 인격적 권리는 법적 승인으로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하였고 현재는 인격권 역시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 통설이라고 할 수 있다(송지원, 2017: 25).

근대법학에서 인격권은 자연인에 한정된 권리였다. 천부인권사상, 자연법론자들은 인격이라는 개념을 사법상의 권리라고 이해하기보다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자연적 권리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 권리능력이 부여된다는 건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흐름에 따라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의 요구에 따라 인격이 부여된 것이라 할 수 있다(구혜경, 2016). 칸트(Immanuel Kant)의 ‘Person’의 개념⁷⁾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물론이고 법인 역시 인격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법학자인 사비니(Savigny Friedrich Karl von)⁸⁾는 ‘Person’은 권리의 주체이고 그 권리는 법질서가 부여한 힘이라고 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자면 인공지능 역시도 사회적 필요에 따라 법질서가 인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며 법인의 본질에 관한 이론 중에서도 법인의제설의 논거로 인공지능을 바라본다면 인공지능의 법인격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이 되지 않는다.

6) 게르만법을 연구해 단체법 이론을 수립한 것으로 유명한 독일의 법학자임.

7) ‘Person’의 특징은 인격체의 자율성, 자유의지 및 최대한의 외적인 자유의 가능조건을 말함.

8) 역사 법학의 창시자로 로마법 연구를 통해 민법학과 국제 사법학에 큰 공헌을 한 독일의 법학자임.

또한 자본주의적 흐름이 아닌 사회적·윤리적 흐름에 따라 발전된 동물의 법적지위에 관한 것도 인공지능에 접목시켜 봄직하다. 이는 인공지능과 같이 동물이 처음에는 단순한 인간의 소유물에서 시작하여 현재에는 서구권에서 소유물에서 더 나아간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고, 독일은 1990년 민법개정을 통해 인간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부여한 일들을 보면 단순한 소유물·도구에 불과했던 동물에게 어떠한 과정을 걸쳐 법적 지위가 주어졌는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논점이기 때문이다.

2. 동물의 법적지위

오늘날 동물 보호에 대한 입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동물을 단지 보호의 대상으로 보자는 동물복지론과 적극적으로 동물에게 인격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동물권리론이 대립하고 있으나(양재모, 2009: 293), 동물복지론적인 관점을 따르는 외국에서도 동물을 범죄의 주체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통적으로 세계의 법학은 인(人)과 물건으로 양분한다(곽윤직, 2015: 37). 인은 권리의 주체가 되고, 물건은 권리의 객체가 된다(박정기, 2010: 43). 우리 민법에서의 인의 개념은 보통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또한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곽윤직, 2015: 94). 따라서 동물의 지위에 대한 일반 규정은 우리민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야생동물에 대해서 민법 제252조제3항에 의해 무주물로 보고 있으며 제759조에서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을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동물은 물건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피터 싱어(Peter Singer)가 주장한 동물복지론의 영향을 받아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민법 등이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한 것과는 정 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윤철홍, 2011: 423).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동물보호법에서 보호대상으로 규정한 동물은 특수한 보호를 받게 된다. 동물보호법의 보호대상은 동물만이 아니다. 동물보호법 제1조를 보면 인간의 정서 또한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동물만을

보호대상으로 보는 동물복지론의 관점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윤영석, 2018: 69). 또한 판례에 있어서도 2006년 천성산 도롱뇽 사건에서 대법원은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이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라고 원심의 판단에 손을 들어준 바가 있다.⁹⁾ 그러나 이러한 법률에 따라 동물을 물건이라 판단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기술적인 관점에서 정의되었을 뿐 동물에게 감정이나 감각 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법률상 인이 아니고 권리상 주체가 아니라는 것만을 의미한다(박찬운, 2010: 32).

동물의 법적지위가 물건이기 때문에 형법은 동물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물론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물에 대한 재판¹⁰⁾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Jen Girgen, 2003: 105-106).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극히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이며 현대에 적용하기에는 무리한 감이 있다. 동물을 처벌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상징적인 선언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윤영석, 2018: 70). 따라서 이성적 판단능력이 없는 동물은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우리민법 해석에 따라서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대상이 아닌 동물은 물건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물건이라는 본질적인 지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윤영석, 2018: 71). 또한 이론적인 입장에서도 인간과 동물의 동일한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보는 것이 현재 통설이다. 동물에게 권리를 부여한다면 인간이 마음대로 동물을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견해는 현실적으로 동물과 인간의

9) 대법원 2006.6.2. 선고 2004마1148, 2004마1149(병합) 판결

10) 2014년 아르헨티나 항소법원이 오랑우탄 산드라에게 신체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2016년 아르헨티나 멘도사주 법원은 침팬지(세실리아)가 물건이 아니라 비인간 인격체로서 브라질 영장류 보호지역으로 보내져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1408년 프랑스 왕국에서는 돼지들이 아동살해 혐의로 기소돼 교수형을 당하였음.

관계를 도외시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때문에 오늘날에는 동물복지론이 동물보호의 이론적 바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박찬운, 2010: 316-317).

3. 인공지능과 동물의 비교

현행법과 동물권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보았을 때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를 동물과 같은 지위로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인간주의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은 특정분야에서 인간에 준하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이다.

물론 동물권도 기존의 물건이라는 입장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했다. 19세기 중반부터 동물복지론을 바탕으로 서구의 선진 국가에서는 동물의 복지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독일은 1990년에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문을 새로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지위를 인정하였다(박정기, 2010: 26). 하지만 이것은 동물을 권리주체 즉 인의 개념으로서 포함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권리·의무 능력의 필요를 전제로 하는 권리주체로 포함하는 것은 동물의 성질상 해당되지 않고, 입법자 또한 동물을 통해 인을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동물을 단순히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 대신에 보다 인간과 밀접한 존재로 다루자는 입장이 대두되고 있다(박정기, 2010: 32-36).

위와 같이 동물의 권리와 법적 지위는 결국 동물의 가치를 보호하고 인격의 범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인과 물건도 아닌 그 사이의 제3의 지위에 대한 새로운 법률적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인격이란 무엇이고 왜 인격이 주어졌는가, 또한 어디까지 인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다(양재모, 2009: 291). 따라서 새로운 법적 지위가 부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의미하지만, 동물의 법적지위를 인공지능에 부합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동물권이 발전하게 된 이유가 인간의 감정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복지주의자인 피터 싱어는

자신의 저서인 동물 해방을 통해 과거에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았지만, 현재는 고통, 감정을 느끼며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감정을 중점으로 동물 또한 인간과 같이 행복, 슬픔의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동물의 권리를 보호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며, 동물권리주의자인 톰 리건(Tom Regan)은 동물에게는 인간과 달리 고유한 권리와 감정이 있으니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동물권의 발전은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동물권은 인간에 준하는 감정을 가진 권리객체로서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가며 인간과 물건사이의 제3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경우는 인간과 같은 감정은 느끼지 못하여도 인간에 준하는 능력을 지니고 법적행위를 하고 있다. 인간에 준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그에 대한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법인격을 부여 하는 것이 타당하다(송지원, 2017: 37). 따라서 인공지능을 권리의 객체인 동물과 동일 선에서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법인과 비교

현행법(민법 제34조)에서 법인이 권리능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입법에 의해 법인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인공지능의 권리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가장 유용한 방법은 선행적으로 인공지능의 법인격 인정 여부를 법인제도에 대입하여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¹¹⁾ 이때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신분이나 상속 등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향유할 수는 없지만 재산권, 명예권, 생명권 등 유증을 받을 수 있는 지위는 인정된다. 법인이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행위에 대

11)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됨.

한 권리능력을 실현할 수 있다. 권리능력의 한정은 그 범위에 대해 법인의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이는 행위능력이 있다면 법인의 불법행위에 있어서 그 책임을 법인이 가지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의 대표인 자연인이 가지는 것인지에 대하여 법인 그 자체의 책임을 가지는 것인지 본질론적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법인의제설, 법인실제설, 법인부인설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법인의제설에 따르면, 자연인만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전제 하에 법인은 단지 법률에 의해 자연인을 의제한 것이라 본다. 즉 원칙적으로는 자연인만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의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일정한 단체에게도 법률에 명시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법인의제설은 법인이 권리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데, 이 전제에는 사비니와 빈트샤이트(Bernhard Windscheid)가 주장한 권리의사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사람들의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법인도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받는다(박의근, 2015: 1757-1758).

둘째, 법인실제설은 법인도 자연인과 같이 사회에서 독립한 존재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 또한 권리주체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법인은 구성원들이 유기적으로 합성된 실체체로 사회에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의 실체성을 인정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인실제설은 여러 나라들로 전파되면서 각색되었는데, 예를 들면 법인이 유기체가 아닌 법인격에 적합한 조직체라는 프랑스의 조직체설, 법인의 본질은 독자적인 사회적 작용을 하고 있다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다수설인 사회적 가치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박의근, 2015: 1762).

셋째, 법인부인설은 법인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에 초점을 두어 법인의 실체성을 증명하려 하였지만, 법인의 존재성을 부인하려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법인부인설은 법인의제설의 심화된 학설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법률에 의해 법인의 권리능력은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의제설을 주장한 사비니의 의제의 논지에는 법인의 사회적 실체의 존재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률효과를 확장시키는데 있는 것이므로 법인부

인설은 법인실재설에 대한 근본적 오해가 있는 학설이라 할 수 있다(박의근, 2015: 1764).

현재 다수설은 법인실재설이지만, 인공지능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할 때 “과연 법인실재설을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부정적이다. 법인실재설의 대표적인 학자인 기르케는 법인 또한 자연인과 같이 스스로 움직이는 유기체라 주장했고, 자연인과 법인은 사람과 사람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단체일 뿐 그 속성에서는 양자 간의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법인의제설에 따르면 자연인만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은 단지 사람들의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법률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한다. 다시 말하면 법인이 인간 고유의 마음을 가진 집합은 아니지만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인간주의적 관점에 입각해서 보았을 때 인공지능이 특정분야에서 인간에 준하는 능력을 발휘해 법적행위를 하고 있다면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법률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함이 타당할 것이다. 때문에 법인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생각하는 유기체로 보는 법인실재설보다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는다라는 법인의제설을 준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법적지위는 지금의 법인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자연인과 근본적으로 다르기에 제한적인 법인과 같이 현실적으로 형벌이나 명령을 부여받음에도 능력이 없는 재산형, 징역형과 같은 형벌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에 맞는 새로운 형벌을 고안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IV. 인공지능의 사법상 책임

산업혁명 이후 급속도로 발전한 과학의 발전에서 인공지능은 처음에는 단순한 기계의 형태로서 생산에 관련된 부분을 급속도록 바꾸며 인간의 삶을 질적으로 발전시켰다.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이른바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도달한 현대이다. 정보공개청구 답변 자

료¹²⁾에 의하면 세계의 기술선도국들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 중요함을 인지하고 이를 정부 정책의 중요과제로 규정해 놓았다(최영출, 2018). 특히, 프랑스에서는 인공지능의 4대 핵심 분야로 의료·환경·운송수단·국방을 선언하며 점진적으로 정교한 분야에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10). 이렇듯 현재 인공지능은 인간들의 삶의 영역에 깊게 침투해 있어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데, 이에 따른 반작용으로 법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에 반해 인공지능의 민·형사상 책임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의 분류에 따라 각각 처벌을 달리해야하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인공지능에게 사법상의 책임이 주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인공지능에게 어떠한 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논의로는 현재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적재산권법 중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인공지능이 저작권을 위배했거나,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물을 위배 당했다면 인공지능에게 보호해야할 법익은 무엇이며, 처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적용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적용범위를 정하지 못하여 사법상 책임에서 동떨어져 놓이게 된다면 법의 공백이 생기게 되므로 법률상의 혼란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특히,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은 민사적인 분야에서의 혼란이지만 만일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사고나 인공지능이 저지르는 총체적인 형법상의 책임 문제에서 인공지능의 책임과 법의 적용범위를 정하지 못했을 때 야기될 사회적 혼란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사법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여러 가지 입법시도를 통해 그 공백을 메우려고 하고 있다. EU의 전자인간 선언¹³⁾과 일본의 인공지능의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여부에 대한 입법적 노력(최해옥·최병삼·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보공개청구(2018.10.29)하여 확보한 답변 자료를 분석한 내용임.

13) 2017년 1월 12일 유럽연합(EU) 의회에서 인공지능 로봇(AI)에 대해 부여한 법인격의 이름으로 세계최초로 인공지능의 법인격을 부여하였음.

김석관, 2017: 19-22) 등이 그러한 것이다. 각 국의 입법적 노력과 더불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문제와 형사상의 문제에 대해 현행법상 적용 법리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에게 어떠한 사법상의 책임을 부여해야하는가를 인간주의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1. 인공지능의 손해배상책임

1) 지식재산기본법의 적용

오늘날의 인공지능은 단순한 정보를 추출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넘어서 스스로 창조하고 창작하는 인간의 예술의 영역에 도달했다고 보는 것이다. 2011년 스페인의 말라가대학(Universidad de Málaga)은 작곡을 하는 인공지능 라무스(Lamus)를 개발하였고, 미국의 스타트업 테일러브랜드(TAILORBrands)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지역, 사업유형 등을 입력하고 원하는 디자인 스타일을 선택만 한다면 로고를 자동적으로 디자인해 주며 인공지능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영역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음악이나 디자인과 같은 인간 고유의 예술성의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의 창작물이 더 이상 인간과 구별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도달함에 따라 기존의 인간중심적인 저작권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저작권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물이란 저작자 개인의 창작적인 특성이나 개성이 반영된 무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은 특허나 실용신안법의 신규성과 같이 ‘기존의 것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공지능은 현재 법적지위가 정해져있지 않음에 따라 당연히게도 사법상의 권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인공지능에서도 그 강도가 매우 낮은 약한 인공지능에 한해서는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데, 제조물의 지위에 불과한 인공지능은 저

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제조물의 지위를 부여받는 인공지능은 이른바 인간의 보조적 수단인 도구의 위치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인간이 컴퓨터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도구로서 창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공지능에게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저작물의 창작과정에서 컴퓨터의 도움을 얻어, 컴퓨터가 저작물의 표현에 있어 상당 부분 기여한 경우에는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소유권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최재원, 2017: 118). 현행 저작권법(제10조제1항)은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규정하며 사진 저작권의 경우 촬영자, 미술 저작권은 작품을 최초로 그린 자, 어문저작물은 저작물을 처음 작성한 자가 원시 취득하는 것이다(최재원, 2017: 121). 그러나 문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이라고 규정한 것에 있다. 그렇다면 인간이란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문제가 인공지능의 저작권에 관한 문제의 핵심 논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개념은 창작을 최초로 한 자연인으로 정해지지만, 저작물에 따라서는 창작행위를 조직하고 기회를 제공한 기업주체인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음악의 저작권이 작곡가인 자연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반제작사에게 일정한 저작권접권을 부여하는 것이 있다. 즉, 자연인만이 아닌 법인 또한 저작자로서 인정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인공지능이 법인격을 부여받아 사법상의 권리와 책임이 생기게 된다면 인공지능의 저작물도 권리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2) 인공지능의 저작권 인정 필요성

일본의 공립 하코다테 미라이 대학(公立はこだて未来大學)에서는 일본 단편소설의 거장인 호시 신이치(ほししんいち)가 만든 약 1000편의 작품의 특징을 AI시스템에 학습시켜 만든 ‘AI시스템소설’을 호시 신이치상에 응모하였고, 도쿄대학교와 메이지대학교의 연구팀은 가사만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곡 붙이고 합성 음성이 동반된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공개하기도 하는 등 무엇이 인간의 창작물인지 인공지능의 창작물인지 기술의 진보가 급속함에 따라 외견상 구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현존하는 기술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기하학적인 수치로 인공지능의 창작물이 폭발적으로 공개될 것인데,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조차 확립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시기에 사법적인 혼란이 일어날 것임은 명백하다. 저작물은 존재하지만 저작권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공지능의 저작물은 무분별하게 침해당할 것이고 이는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이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저작물들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데 이러한 딥 러닝(Deep learning)¹⁴⁾과정에서 다양한 저작물의 활용이 저작권법상의 이용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이다(손영화, 2016: 318). 만일 이용에 포함된다면 정당한 사용료를 내야한다. 이를 무시하고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면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의 애매모호한 규정에 대한 채고와 인공지능에게 저작권법 위반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3) 각 국의 입법례

현재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에 관한 사법적 노력이 매우 미비하고 현행법이 자연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기에 인공지능의 저작권을 어떠한 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가늠이 잡히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법선진국들의 입법례를 통해서 해소가 가능하다고 본다.

영국의 저작권법은 전통적으로 저작권에 의한 저작물 보호의 근거에 있어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창작성과 더불어 노동력 또는 기술의 투입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영국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경우도 ‘이마의 땀 이론(the

14) 사물이나 데이터를 군집화하거나 분류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로 보통 학습을 통해 생각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의미함.

sweat of the brow')¹⁵⁾ 혹은 '부지런한 수집 이론'¹⁶⁾을 구성해 저작자가 저작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상당한 자본이나 노동을 투하했다면 낮은 수준의 창작성만으로도 저작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최재원, 2017: 122). 다만 이것이 인공지능의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미국 의회는 1974년 CONTU(The National 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를 설립하고 이에 관한 문제를 다루게 하였으나 프로그램의 이용자가 저작자라고 하였고, 2014년에도 저작권의 등록은 사람이 주체가 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였다(최재원, 2017: 127). 즉, 미국은 사람이 창작하지 않은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해원, 2017: 141).

영미법계와는 다르게 대륙법계에서는 저작권의 보호는 저작물이 문화발전을 유인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다. 따라서 문화발전을 유인할 수준의 창작성이 없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유인이론'¹⁷⁾에 그 기초를 둔다. 우리나라 역시도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유인이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유인이론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 사상과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라 저작자의 개성이 저작물 중에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 있으면 되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모두 창작성이라는 구성요건을 같이하고 있으나 결론적으로 저작권자는 인간이라는 결론에 합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당장을 대비한다면 위의 입법사례를 따른 사법적 노력으로 족하지만 인공지능을 인간주의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였을 때에 인공지능이 창작이라는 특정

15) 저작권법에서 노동과 비용의 투자에 대한 보상, 즉 노동이론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재화를 지불했는가를 중점으로 생각해 저작권자를 판단하는 이론임.

16) 이마의 땀 이론과 같은 맥락으로, 낮은 수준의 창작성만으로 저작권을 취득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의미가 같기 때문에 이마의 땀 이론과 같은 내용으로 쓰임.

17) 메릴랜드 대학교 심리학과 벤자민 슈나이더(Benjamin Schneider) 교수가 1987년에 발표한 유인-선발-퇴출 이론으로서 조직문화가 구성원들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임.

분야에서 인간에 준하는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인공지능의 권리능력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상에서도 인공지능의 저작물은 인공지능이 그 저작권자가 되어야하지 인간만이 그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법인이 저작권자로서 인정받는 만큼 법인과 유사성을 띄는 인공지능 역시도 저작권자가 되지 못한다는 법이 없다. 다만 인공지능의 저작권을 인정했을 때 사법적 이익이 인공지능에게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인공지능은 법인도 자연인도 아니므로 재산권이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는 일부분 해소가 가능하다. 2017년 유럽의회는 전자인간의 법적지위에 대해 로봇세(Robot Tax)의 도입을 함께 말하였다. 로봇세라 함은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자연인이 납부할 세금을 말하지만 본질적으로 인공지능이 납부해야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저작권료를 로봇세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으며 저작권 등록과정에서 발생하는 등록비에 관한 것도 해결할 수 있다. 로봇(AI)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로봇이 법인과 같이 법인격을 갖게 된다면 법인의 재산권과 유사하게 로봇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3. 인공지능의 형사상 책임

1) 사례1: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하며¹⁸⁾ GPS와 센서를 통해 목표한 지점까지 스스로 도로의 상황을 판단하여 운행하는 기술이 탑재된 신세대 자동차를 의미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미리 입력된 알고리즘에 따라 주변사람이나 사물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고 운행 중 변수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인공지능 스스로 결정한다(권영준·이소은, 2016: 454). 인공지능이 운행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기술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운행 중 사고에 대해서 법적 책임의 귀속여부가 누구에게 있는 지가 중요하다.

18)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3(2015. 8. 11. 공포)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단계는 5단계로 구분 되는 데¹⁹⁾ 1단계와 2단계는 아직까진 인간의 영향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형태이고, 3단계는 자동차의 시스템이 주행함으로써 운전자가 개입할 필요는 없으나 유사 시 운전자가 운행에 개입해야하는 단계이다. 4단계는 3단계에서 조금 발전한 수준으로 복잡한 운행환경에 대해 인공지능이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단계이다(이정재, 2017: 6-7). 마지막인 5단계는 사실상 완전한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운전자의 개입과 주의를 요하지 않고 100% 인공지능이 운행할 수 있는 단계로 운전자가 아닌 탑승자라는 개념이 적용된다. 현재의 기술력은 이미 1·2단계의 수준을 넘어 테슬라의 자율주행자동차가 3단계의 기술을 상용화하였고, 독일의 자동차 회사인 벤츠(Benz)가 2021년까지 5단계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6). 이미 상용화된 기술인 3단계 기술만 해도 운행을 인공지능이 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 책임의 귀속여부를 정립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기술의 2단계 까지는 운전의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지만 3단계 이후로는 운전의 주도권이 인공지능에게 전적으로 맡겨지게 된다. 인공지능이 인간이 대처하기 힘든 운행의 변수를 대처함으로써 사고의 발생률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는 교통 환경이 도래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도 운전함에 있어 판단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듯이 인공지능의 판단에 의해서도 사고가 발생한다. 인공지능의 판단에 있어 법률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2단계에선 운전자의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3·4단계의 경우 도로주행에 있어 인공지능이 스스로 도로주행에 대한 모든 결정을 하여 인간과 같은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게 법적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미 주요 선도국들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시험 운행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구글(Google)의 경우 다양한 주행환경에서 30만마일 이상을 사고 없이 운행한 바가 있으나(김범준, 2013: 368) 반대로 테슬라(Tesla, Inc)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모델

19) 미국자동차공학회(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에서 정한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이 기준을 따르는 추세임.

S가 사망사고를 일으킨 바가 있다.

다만 운전자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스템의 중요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용범위를 벗어난 명령을 입력하여 운행 중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인공지능의 운행 중의 운전자가 강제로 자신이 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 책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인공지능의 판단이 아닌 외부요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공지능의 운행 중 외부의 바이러스 프로그램에 의해서 감염, 오류 등이 발생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조물 책임법의 법리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무과실적인 제조상의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인과관계의 입증은 인공지능 혹은 피해자의 몫으로 남아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결함의 존재와 관련하여 판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입증의 곤란함을 완화하고 있다.²⁰⁾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 하는 것이 아닌 사람과 기계, 인간과 비인간, 생물과 무생물 사이의 경계를 허물게 될 중요한 법적 과제이다(송지원, 2017: 89). 선진국들은 이미 관련 입법안들을 내놓은 상태이다. 영국은 인공지능을 단순한 제조물로 판단하여 자율주행자동차등에 인해 사고발생시 제조업자들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칫 제조업자에게 과중한 책임이 물리게 되어 인공지능의 개발을 기피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 일본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책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고 있다.²¹⁾ 그러나 이 또한 과도하게 운전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킨다면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을 기피하게 되어 결론적으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정체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과학발전에 이바지함과 법적 책임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인간과 같은 행위를 하는 3·4·5단계의 기술이 탑재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에 사법상의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장 현

20) 대법원 2004.3.12.字 판결(대법 2003다16771)

21) 2018년 일본 의회에 발의된‘자율주행 관련 제도정비 개요(개정안 초안)’내용

실적으로는 국민의 법감정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견되기에 인간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유럽연합의회의 전자인간이라는 새로운 법인격 제시로 나타나고 있다. 자연인, 법인을 이은 새로운 법인격의 인정을 통해 인간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공지능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사법상의 책임을 인정한다면 법적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례2: 인공지능 의료기기

인공지능의 왓슨은 이미 의료분야에서 실용화되고 있어 스스로 판단해 환자를 진료하는 단계에까지 발전해 왔다. 정보공개청구 답변 자료²²⁾에 의하면 이미 인공지능의 시각지능의 인식률이 인간을 뛰어넘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3). 이에 따라 정확하고 빠른 진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환자들은 값싸고 확실한 의료를 받게 된 것이다.²³⁾

그러나 의료 과정에서 잘못된 진단이 내려졌을 때, 수술을 잘못 했을 때 법적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이다. 대다수의 국가는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인공지능의 독립성(식품의약품안전처a, 2017: 2)을 부정하게 되며²⁴⁾ 인간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의료라는 특정분야에서 인간과 같은 행위로 진료를 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부정으로 인공지능을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도구로 바라보는 관점이 전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문제에 있어서 사법상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 지, 혹은 인공지능에게 있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가 무엇인지와 신뢰원칙의 적용여부가 중요하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22) 2018.10.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확보한 답변자료 분석내용

23) ImageNet 경진대회(스탠포드 주관, 이미지 내 사물 인식의 정확도 경쟁)에서 '15년 MS가 96.43%를 달성하며 인간의 인식률(94.90%)을 추월하였다. ('17년은 97.85% 수준)

24) 2018.10.2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보공개청구하여 확보한 답변자료 분석내용 중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의료용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질병을 진단 또는 예측하는 독립형 소프트웨어 형태의 의료기기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과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²⁵⁾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규정에 대한 해석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간호사의 행위에 대한 선행연구가 유용하다. 간호사의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보조행위일 뿐이라는 의견이 강하지만, 간호업무의 체계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이지연, 2018: 72). 주사약의 경우 종류·부위·방법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하면서도 근육주사와 정맥주사의 경우는 간호사의 업무로, 동맥주사와 마취주사의 경우는 의사의 업무로 구분해야한다는 견해도 있다(신국미, 2010: 252). 따라서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행위도 의사의 업무에 준하는 행위라면 의료행위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인공지능이 수행하는 업무는 약을 처방하는 방법과 수술방법에 대한 권고가 대표적으로, 이는 환자의 치료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행위가 아닌 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다.²⁶⁾

의료행위에는 수평적 분업과 수직적 분업의 방식이 있다. 수평적 분업은 각 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수직적 분업은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된다(이지연, 2018: 94). 즉, 인공지능과 의사의 관계가 수평적 관계인지 수직적 관계인지가 중요 논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인공지능으로 왓슨 포 온콜로지(Whitson for Oncology)가 있다. 왓슨은 환자의 진료기록, 검사 기록, 유전 정보, 수술 가능 여부 등을 입력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치료법을 권고해주는 인공지능이다. 실제로 왓슨은 의료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은 물론 국내에도 2016년 도입되어 현재 부산대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계명대동산병원·건양대병원·조선대병원·전남대병원 등 7곳에서 활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급성 골수성 백혈

25)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도 2544 판결

26) 대법원 2001. 7. 13. 선고(99도 2328판결):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진료·검안·처방·투약과 외과적 기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병 환자에 대해 의사와 다른 진단을 내어 치료하였고, 국내에서도 암환자에 대한 치료방법을 왓슨에게 구하는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왓슨의 지위에 대해서는 진료를 보조하는 보조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며, 권고의 역할에만 그치는 성능을 보았을 때 합리적인 지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왓슨은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이행보조인의 지위에 불과한가? 라는 의문이 남는다.

현행법상 이행보조인의 관계는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가 대표적으로 진료의 주체는 언제나 의사이며 간호사는 이행보조자로서 역할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즉, 간호사는 진료보조행위에 관여하는 보조행위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이고, 의료 업무는 의사의 책임 하에 이뤄지기에 의사는 진료보조 업무의 전 과정을 지도·감독해야 하며 위험 발생 가능성을 의심하고 주의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이인영, 1999: 202). 그러나 왓슨과 의사의 관계를 단순히 이행보조자의 논리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미 간호사의 업무조차 전문성이 증대되어 단순 업무이행을 하는 이행보조자가 아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의료인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최근에는 간호사의 책임을 묻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이지연, 2018: 70). 그런데, 왓슨의 경우는 간호사보다 의료 업무에 관여하는 비중이 크다. 의사와 같이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방법을 제시하며 의사가 찾지 못했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실례가 있다. 인간과 같은 행위를 하면서 정확성은 인간보다 더욱 높은 데 이를 이행보조인이라고 규정한다면 딥러닝 기술을 탑재해 급격하게 변하는 인공지능이 수술 집도와 같은 의료 업무까지 수행하게 될 경우 업무상 과실책임에 대한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것이다. 즉 이미 인간과 같은 행위를 하는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강한 인공지능으로 보고 수직적 관계가 아닌 의료의 전문성을 인정해 수평적 관계로 인공지능의 과실 혹은 업무상과실이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의 성능에 대한 판단 기준도 문제점이 있다. 정보공개청구 답변자료²⁷⁾에 따르면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평가결과의 성공기준이 법이나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공지능을 만드는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하였다(식품의약품안전처²⁷⁾, 2017: 16). 이는 자칫 기업이 임상시험 평가결과를 부풀리기 위해 성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위해 성공기준을 낮추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는 결국 인공지능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질적 저하와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성공기준안 마련이 시급하다. 의료업무에 있어 과실책임을 인정했을 때 인공지능에 적용되는 형벌이 벌금형, 징역형 등으로는 처벌의 실효성이 애매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과연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책임자가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라는 관념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윤영석, 2018: 175).

국민의 법감정과 형벌의 형식에 대한 논의는 비단 의료 측면에서만 일어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발생 시 책임문제,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문제 등 민사와 형사를 통틀어서 인공지능의 사법상 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 큰 장애요소가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감정과 새로운 형벌의 형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V. 결 론

인공지능은 70여년 동안 연구되어 왔다. 인공지능의 정의를 규정하고 강도에 따른 분류를 중점으로 진행되어 오늘날에 분류학적인 정리가 마무리된 상태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인공지능 그 자체에 대한 연구였을 뿐, 인공지능이 사회적 존재로 나아갈 때 법적지위와 사법상의 책임에 대해서는 미비하다.

본 논문은 사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하는 등 정책상의 노력과 인공지능이 법적지위를 가지고 권리주체로서 사법상의 책임을 가지는 것이 사회전반과 법학전반에 유용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중 해석상의 논의는 현실에 즉각 반영

2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보공개청구(2018.10.29)하여 확보한 답변자료를 분석한 내용임.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상 논의를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법적지위를 위한 논의에는 인공지능 중 강한 인공지능은 어떤 것이냐는 것이다. 인간과 같은 감정을 지니지는 않으나 특정분야에서 인간에 준하거나 동일, 혹은 그 이상의 행위능력을 가지면 된다는 인간주의적 관점이 적절하다. 현실적으로 초지능주의적이나 형이상학적 관점은 미래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졌을 때의 일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법인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간주의적 관점에 따르는 것이 작금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인간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인공지능을 현행법상 권리능력자로 인정받는 자연인과 법인이라는 기존의 범주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인공지능만을 위한 법인격을 창설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비니의 형이상학에 근거한 기존의 논리를 통해 인격권은 ‘법질서가 부여한 힘’이라는 논리에 따라 인격권은 부여된 힘이라고 보았다.

인공지능의 적절한 지위부여는 인위적 탄생이지만 사법상의 권리주체로 인정되는 법인의 본질에 비교하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 동물권에 관한 논의는 인간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부여했다는 것이 중점이다. 제3의 법적지위를 부여했다는 것은 인공지능의 법인격, 범위에 대해 연구할 때 중요한 선행이 되지만 감정을 발전의 근본으로 삼는 동물권은 인간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감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동물권 논의는 대체로 무의미하다. 결국 인공지능의 법인격과 관련된 논의는 법인본질론에서 해답을 찾아나갈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법인의제설에 맞추어 생각해본다면 적합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인공지능도 자연인과 같은 감정과 이성을 갖추지는 못하지만 특정 분야에서 인간과 같은 행위를 이뤄나가고 있고, 이에 대한 사법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인공지능의 법률행위에 대해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에 기인한다. 사법상의 책임문제가 가장 두각 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문제와 의료 업무에서의 과실책임,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들을 검토하였을 때, 인공지능에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사회적 필

요성에 의해 타당하다는 것이다.

입법적으로 인공지능의 법인격 부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2017년 유럽 연합 의회에서 인공지능 로봇에 “전자인간”의 지위를 부여한 ‘로봇시민법’ 결의안이 있어 인공지능의 작위와 부작위에 관한 사법상 책임주체의 귀속여부와 법적지위를 결정지을 수 있다. 즉, 인공지능의 법적지위는 일반적으로 법인과 같다고 할 수 있으나 행위에 있어 인공지능의 개입정도에 따라 자연인과 대등한 지위까지도 염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자연인과 대등한 법인격을 부여했을 때에 문제되는 권리들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이 권리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지, 인공지능에 대한 형벌은 어떻게 이뤄지며 인공지능에게 책임이 귀속될 때 국민들의 법감정 해소 등은 향후 해결해나가야 할 또 다른 과제이다. 기술은 급변하고 있고, 이미 인공지능의 법적 문제는 실생활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차후의 과제에 대해서는 논의와 연구를 진행하되 우선적으로 인간과 같은 행위를 하는 인공지능의 사법상의 책임과 법적지위를 정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문제 해결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인석(2012). “로봇이 책임과 권한의 주체일 수 있는가”. 새한철학회. pp.3-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인공지능(AI) R&D 전략”. 정부공개청구 답변자료.
- 곽윤직·김재형(2015). 『민법총칙(제9판)』. 서울: 박영사.
- 구혜경(2016). “벤처기업의 기술혁신 및 경영성과의 패턴변화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pp.207-227.
- 권영준·이소은(2016).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와 민사책임”. 한국민사법학회. pp.449-495.
- 김범준(2013).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에 따른 보험법리의 개선”. 「상사판례연구」 제26권제3호. 한국상사판례학회. pp.367-400.
- 김진석(2017).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의 구별의 문제”. 철학연구회. pp.111-137.
- 박의근(2015). “법인본질론에 관한 소고 - 법인이론에서의 법인의 사회적 실재성과 권리주체성에 대한 구별 및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관한 법인이론의 분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22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pp.1751-1784.
- 박정기(2010).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51권, 부산학교 법학연구소. pp.25-53.
- 박찬운(2010).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론 - 유럽 상황을 중심으로”. 「법조」 제59권제1호. 법조협회. pp.300-335.
- 박희권(2019). “동물에게도 법적권리가 있을까”, 한국경제 2019.7.8.,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070898061>
- 손영화(2016). “인공지능(AI)시대의 법적 과제”. 「법과 정책연구」. 한국법정책학회. pp.305-329.
- 송지원(2017). “인공지능의 법인격에 관한 연구 - 권리주체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식품의약품안전처(2017).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

- 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정부공개청구답변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2017).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의 임상 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 정부공개청구답변자료.
- 신국미(2010). “간호과오의 유형별 분석과 법적 책임”. 「한양법학」 제21권 제4집.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양재모(2009). “인·물의 이원적 권리체계의 변화 - 동물의 물건성과 인격성”. 「한양법학」 26, pp.289-303.
- 양천수(2011). “인격권의 법철학적 기초 - 인격권의 구조·성장·분화”. 「법과 정책연구」. pp.1139-1165.
- 윤영석(2018). “인공지능로봇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철홍(2011).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민사법학」 56, 한국민사법학회. pp.339-435.
- (2011). “민사법 체계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2018년도 법무부 연구 용역보고서」. pp.1-205.
- 이봉림(2008). “인격권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인영(1999). “의료분업과 신뢰의 원칙”. 「연세법학연구」 6(1), pp.193-211.
- 이지연(2018). “의료사고의 형사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 수직적 분업에서 의사의 주의의무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해원(2017). “테크노 크레아투라((Techno Creatura) 시대의 저작권법”. 「저스티스」 통권 제158-1호. pp.132-159.
- 장지현(2017).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한 사회적 기업 지속가능성 시나리오 분석”. 충북대학교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pp.63-86.
- 최연재(2000). “일반적 인격권의 법적 구성”.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영출(2018). “규제와 국가경쟁력간의 인과관계”.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pp.137-147.
- 최재원(2017).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주체”,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 엔터테인먼트법 연구소. pp.117-137.
- 최해욱·최병삼·김석관(2017).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과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1-25.

- Jen Girgen(2003). “The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Animals”. *Animal Law* Vol. 9, Northwestern School of Law of Lewis and Clark College. pp.105-105.
- Searle, John R.(1980) “Minds, brains, and program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3.03

[인터넷 자료]

- 전자신문 “독일서 세계 첫 로봇 살인사건 발생(2015.7.2.)”,
<http://m.etnews.com/20150702000128?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IjtOO3M6NzoiZm9yd2FyZCI7czo3Mzoid2ViIHRvIG1vYmlsZSI7fQ%3D%3D>(검색일, 2019.08.31.)

A Study on the Legal personality and judicial responsi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Noh, YeongSuk* · Hwang, TaeOh** · Park, HwanDoo***

< Abstract >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firstly, appropriate to trea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viewpoint in a humanistic manner. Legal problem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occurred, and in certain fields, the humanistic viewpoint of classifying as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can help to solve the problem when acting the same as humans. Second, artificial intelligence must be given legal status. Artificial intelligence has been put to practical use in various fields such as creation, medical care, and transportation. In particular, in creation and medical care, problems related to copyrights and negligence in business have occurred. is necessary. Third, the legal statu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on the same line as corporations, and in certain cases is comparable to natural persons. Although this is a rights subject, it is logically appropriate to grant rights to artificial intelligence on the agenda of natural persons, such as corporations that have been granted rights due to social needs. If the degree of intervention is severe, judgment is appropriate at the same level as the actions of natural persons.

Key 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Legal Issues, Subject of Rights, Legal Position

투고일: 2019.09.06. | 심사완료일: 2019.12.09. | 게재확정일: 2019.12.11.

* Co-author, Adjunct professor, Division of Polices, Baekseok University
(summer3386119@hanmail.net)

** Co-author, Division of Polices, Baekseok University.

*** Corresponding-author, 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Polices, Baekseok University.